



고용노동부

부산지방고용노동청창원지청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1. 관련

가.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9조제1항제9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
나. 행정절차법 제14조

2.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 통지)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.

가. 공고번호: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(공시송달) 공고 제2023-97호

나. 공고장소: 창원지청 및 창원고용센터 홈페이지

다. 공고내용: 붙임 참조

라. 공고기간: 2023.11.23.~2023.12.8. (15일간)

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. 끝.

주무관

남태경

팀장

전결 2023. 11. 23.

양수정

협조자

시행 창원고용센터-21477

접수

우 51503

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(상남동 27-3 고용지원센터빌딩) 6층 국민취업지원팀 / <http://moel.go.kr/changwon/>

전화번호 055-239-0994

팩스번호 0508-8230-0427 / namtg512@korea.kr

/ 비공개(6)